

##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29.

여성가족부장관

### 1. 인증제도 안내

#### □ 제도 개요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이하 '가족친화법')

####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스마트워크, 연차사용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 ★ 신규 운영 제도 안내

##### ■ 예비인증

- 중소기업 대상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 시범운영

##### ■ 선도기업

- 가족친화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우수기업(공공기관 제외)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선정

## 2. 신청 안내

### □ 신청개요

- (신청기간) '25.5.9.(금) ~ 7.11.(금)(유효기간 연장 / 재인증 : ~ 7.8.(화))
  -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이하 '누리집', [www.ffsb.kr](http://www.ffsb.kr))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 신청 시 입력한 메일 및 연락처로 향후 세부절차 안내 메일 및 문자 발송 예정

### □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 업로드(해당기업에 한함)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및 취업규칙 업로드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별첨4,5) - 누리집에서 직접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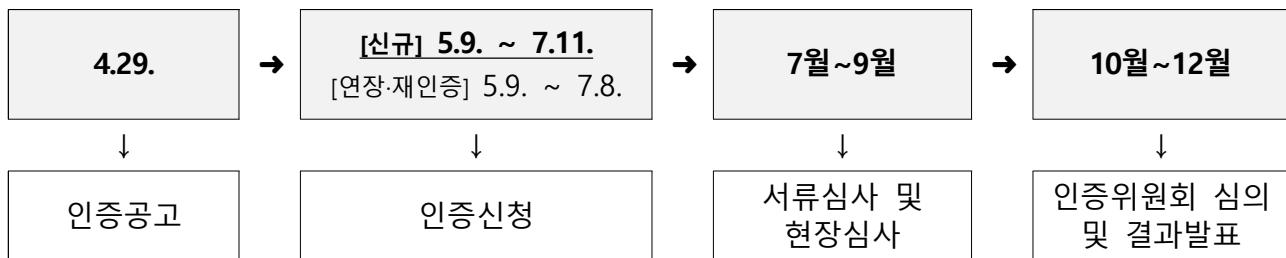
※ 누락서류 등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미보완 시 심사에서 제외 가능

###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 누리집([www.ffsb.kr](http://www.ffsb.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공고

### 3. 인증 절차

#### □ 세부 절차 및 일정(안)



※ 추후 일정 변동 가능

- (서류심사) 신청서 등 제출서류 확인하여 심사
- (현장심사) 기업·기관에 방문하여 심사
  - (심사일수) 신규인증 1일(심사원 2인), 연장 및 재인증 0.5일(심사원 1인)  
※ 기업과 협의하여 현장심사 일정을 결정하며, 확정 후 심사취소 불가(취소 시 차년도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인증위원회 심의)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인증여부 확정
- (결과발표) 인증 결과 발표(12월 예정)  
※ 인증신청 기업·기관 피드백보고서,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누리집에서 개별 확인 가능

#### □ 심사비용 및 납부방법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등	납부방법
신규인증	무료	1,000,000원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사무국의 안내에
유효기간 연장	(심사비 지원)	500,000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부가세 별도
재인증		500,000원	

\* 중소기업은 신규인증(예비인증 포함),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심사비 지원

↳ 단,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4. 인증기준

### □ 인증기준

#### ○ 신규인증

구분	심사항목	통과기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점), 탄력적근무 제도(10점), 가점(최대 6점)</li> </ul>	40점 만점에 24점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친화인증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li> </ul>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대기업 등*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통과기준은 가점을 포함한 점수임

\*\* 중소기업 아닌 기업 및 기관(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등)

####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분	심사항목	통과기준*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공통
중소기업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점(최대 15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100점 만점에 65점 이상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대기업 등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점), 가·감점(최대 10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가족친화 제도실행 35점 이상)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 (가족친화 제도실행 35점 이상)	

\* 통과기준은 가점을 포함한 점수임

\*\* 자체점검(온라인)은 신규인증 이후 매년 전년도 실적을 입력 해야함

#### 《 선도기업 》

- 올해 재인증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12년 이상 연속 유지\*하고 선도기업 심사에 동의한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25년 신규)

\* (대상) 2008년, 2011년, 2014년 신규인증 획득한 기업

- 선정기준 : 재인증 통과 점수\*,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재인증 통과 점수(가점 포함) : 중소기업 75점 이상, 대기업 85점 이상

\*\* 업종별 특성, 남성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률 등

\*\*\* 전체 인증기업의 5% 범위 내 선정

## □ 공통 사항

-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함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여성가족부고시 제 2025-20 호)

#### 2. 인증 통과기준

##### 가. 공통사항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제53조·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제76조의2·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76조의3,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제67조의3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확인 방법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교육부, 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폭력예방교육 부진 공공기관 명단공표 (여성가족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명단공표(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제53조,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6조의2, 제76조의3	최근 2년 내 위반사항 조회(고용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전체 조항	
▶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언론보도, 민원 등

## 5.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가족친화법」 제17조
  - 단,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임(연장 불가능/단, 신규 인증 신청은 가능)
  - ※ 선도기업 유효기간은 재인증 유효기간(3년)과 동일

### □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  
※ 「가족친화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 < 가족친화인증의 표시 >



(가족친화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 □ 인증서 발급

- 개별 다운로드 가능
  - 누리집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 내역확인 → 인증서발급
  - ※ 신규·재인증(유효기간 연장 제외)기업·기관 : 인증서 우편 발송

## 6. 기타 안내

### □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구분	내용	접수방법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인증절차 안내</li><li>■ 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기준 및 제출자료 관련 안내</li><li>■ 질의 응답</li></ul>	
설명회	오프라인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대구(4.29), 부산(4.30), 인천(5.8), 서울(5.9), 충북(5.12), 경북(5.13), 제주(5.14), 강원(5.20), 광주(5.23)</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누리집 - 가족친화인증 – 설명회 참여신청 ※ 회차별 선착순 모집 마감</li></ul>
	온라인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5.19, 5.27, 5.30 ※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가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누리집 - 가족친인증 – 설명회 참여신청 ※ zoom회의 참여 링크 및 설명회 자료 PDF파일 제공</li></ul>

### □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 (인증준비컨설팅) 가족친화인증 신규 및 유효기간 연장·재인증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과 지표 검토 등을 지원
- (문화컨설팅) 컨설턴트가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을 방문하여 가족친화 제도 운영 현황을 진단한 후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심사 시 '가족친화문화컨설팅 등 시행' 항목 가점 (3점) 인정
- (직장교육 지원)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제공  
※ 신규,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심사 시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항목 (5점) 인정

## 7. 문의처

- 인증심사 : 가족친화인증기관(한국경영인증원)/02-6309-9055, 9034, 9042
  - 컨설팅 :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74~5
  - 직장교육 :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72
- ※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 [www.ffsb.kr](http://www.ffsb.kr)

별첨 1.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2.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3. 취업규칙 및 인증배제사유
4.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_중소기업
5.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_대기업, 공공기관
6. 【참고】 필수증빙 리스트 및 근로자 명단 작성예시(현장심사 준비용)

**붙임1****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대상 주요 인센티브**

- 전체 인센티브는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http://www.ffsb.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인센티브 추가·변경 가능



<인센티브>

**‘25년 신설된 주요 인센티브**

주요 내용	대상	제공 기관*
•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 예술강사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 포함 <b>(예비인증)</b> 지원 신청 대상 포함 및 <b>인증기업 선도기업</b> 심사 시 가점 부여는 ‘26년 시행)	전체기업·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물품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1점) 부여	중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기술)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2점) 부여	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 가족친화인증 선도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 * <b>선도기업</b> 중 인증기간 동안 신고사건 접수 및 근로감독결과 적발 사실이 없는 경우 면제	전체기업	고용노동부
•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 <b>예비인증, 인증기업</b> 5점 가점 부여	중소·중견기업	고용노동부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가점(2점) 부여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가점(2점) 부여	※ '26년 시행	중소기업
•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 <b>예비인증</b> 1점, <b>인증기업</b> 2점, <b>선도기업</b> 3점 가점 부여	※ '26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 <b>예비인증</b> 1점, <b>인증기업</b> 1.5점, <b>선도기업</b> 2점 가점 부여	※ '26년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국세청
• 관세조사 유예	중소기업	관세청
• 신규 인증기업 대상 차년도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 할인	중소·중견기업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보험·보증료 할인	중소·중견기업	한국무역 보험공사
• KITA 무역진흥자금 지원 * <b>예비인증</b> 응자 자금 신청 대상 포함, <b>인증기업</b> 심사 시 5점 가점 부여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가족친화인증기업 금리우대 지원 * <b>예비인증</b> <b>인증기업</b> 대출금리 0.3%p 우대	중소기업	SC제일은행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예금 금리우대 지원 * <b>예비인증</b> 예금 공시 금리 + 0.2%p, <b>인증기업</b> + 0.3%p, <b>선도기업</b> 0.5%p 우대	전체기업·기관	수협은행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소속임직원 개인예금 금리우대 지원 * 사랑해정기예금(상품명) 공시금리+0.25% 우대(예비인증기업 근로자 포함)	근로자	수협은행
• 가족친화인증기업 금리우대 지원 * <b>예비인증</b> , <b>인증기업</b> 대출금리 최대 1.0%p 우대	중소·중견기업	하나은행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24) 대구, 인천 → ('25) 대구, 인천, 서울	중소기업	서울
• 지방세 감면 * 부동산 취득세 25% 감면, 주민세(종업원분, 사업소분) 면제	중소기업	제주

\* 중앙부처 (직제순) / 공공기관, 은행, 지자체 (가나다순)

## □ 제공 중인 주요 인센티브

주요 내용	대상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족친화인증 여부를 종합평가하여 평가 * 해당 지표 내 비계량 2.5점 반영</li> </ul>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 심사 시 우대</li> </ul>	전체기업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 일반용역, 기술용역 심사 * 가점 0.4점 부여</li> </ul>	전체기업	국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 심사 시 가점 0.5점 부여</li> </ul>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 계약이행, 일반용역, 기술용역 심사 * 가점 2점 부여</li> </ul>	전체기업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 계약이행 심사 * 가점 0.1점 부여</li> </ul>	전체기업	방위사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보증료 0.2%p 감면</li> </ul>	중소·중견기업	신용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보증 지원조건 우대 *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1.0%, 보증한도 가산</li> </ul>	중소기업	서울신용보증 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잡월드 체험료 할인 및 주차료 면제 혜택</li> </ul>	근로자	한국잡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송출비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포함</li> </ul>	중소기업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 불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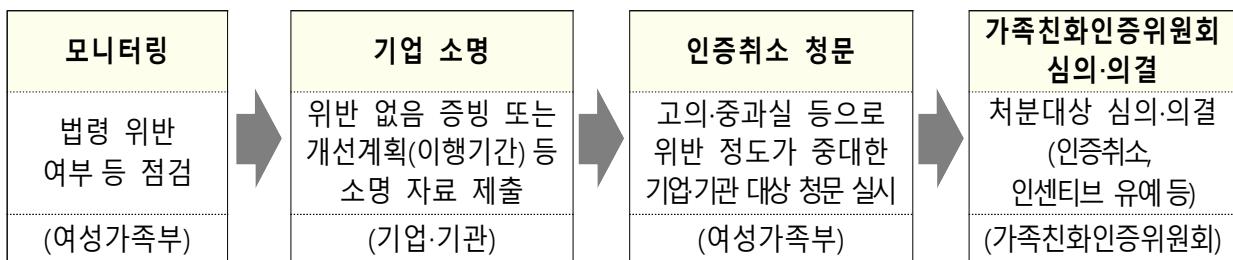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사후관리 안내

○ 인증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업·기관의 인증기준 적합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함

- 위반사항 적발 시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인증취소 등 조치함

- 인증이 취소된 기업·기관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 (법적근거) 「가족친화법」 제17조의2와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와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점검 항목	관련 법령	점검 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	명단공표(교육부, 고용노동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 「남녀고용평등법」 제17조의3	명단공표(고용노동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	명단공표(여성가족부)
고의의 임금체불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명단공표(고용노동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제53조,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6조의2, 제76조의3 ▶ 「남녀고용평등법」 전체 조항	고용노동부 조회·회신
언론보도, 민원 등 사회적 물의 야기	▶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언론보도, 민원

\* 사회적 물의 : 기업·기관이나 대표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위반 사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민원, 소송 등 논란이 있는 경우를 말함

### 【 기업·기관 정보 현행화 】

- (대상정보) 기업·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사업장 주소
- (시기/방법) 연 1회 이상(5월15일부터 7월14일)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www.ffsb.kr](http://www.ffsb.kr)) 내 회원정보 수정  
※ 단, '25년 인증 신청(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포함) 기업의 경우 신청정보로 갈음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현행화 불필요
- (유의사항) 정보 현행화 미이행 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거나 재인증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 인증기업·기관이 폐업한 경우 소명 요청(2회) 후 인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므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가족친화인증기관 대표이메일(한국경영인증원, [ffm@ikmr.co.kr](mailto:ffm@ikmr.co.kr))로 관련사항을 알려야 함